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주요 내용

최근 ESG(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 G는 가장 먼저 주목받기 시작하여 관련 법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ESG로 통칭하지만, G는 기업에게 위험이자 기회인 E와 S에 관해 기업이 최적의 전략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해 가기 위한 근간에 해당하기에 중요성이 크다. 주주권리 보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sup>1</sup>

<sup>1</sup> 본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법령의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삼일 감사위원회센터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법률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중대표소송제도 2020년 12월 개정 상법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일정 기준이란 일반규정(상법 제406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우 총발행주식의 1%를 보유한 주주, 상장회사 특례(상법 제542조의6 제7항 등)에 따른 경우 총발행주식의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주주는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적용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명확해진 내용이다.

그리고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와 같은 지분 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 2. 감사위원 분리선출 2020년 12월 개정 상법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동 조항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상근감사 대신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도 적용된다.

### 이사 선임 방식

- **분리선출 방식:**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적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애초부터 분리하여 선임하는 방식
- **일괄선출 방식:**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다시 새로운 결의로 감사위원이 되는 자를 선임하는 방식

그리고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 분리선출 방식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따로 분리하여 선임 (3% 의결권 제한)

### 일괄선출 방식

- ① 모든 이사를 일괄적으로 선임 (3% 의결권 제한 없음)
- ②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이 될 자를 다시 선임 (3% 의결권 제한)

### 3.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2020년 12월 개정 상법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의결해야 했으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 2020년 1월 개정 상법 시행령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4).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5.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2020년 1월 개정 상법 시행령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다(상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b>종 전</b>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li><li>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li></ol>
<b>신 설</b>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li><li>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던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li><li>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li></ol>

### 6.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2020년 1월 개정 상법 시행령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는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된 요건이다. 또한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하는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